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34 발의연월일 : 2020. 11. 12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• 서영석 •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39조).

법률 제 호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9조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결산) 기금은 회계연도마	제39조(결산)
다 결산보고서, <u>대차대조표</u> , 손	<u>재무상태표</u>
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	
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	
거쳐 해당 연도경과 후 2개월	
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	
한다.	